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3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조은희
김성원 · 엄태영 · 이성권
박충권 · 강선영 · 김재섭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·개축·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,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·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,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,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하천의 치수 기능 및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, 시설의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그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

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및 제74조).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의 오염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“하천환경보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⑪ 제10항에 따른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제출한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통지”를 “통지와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”로 한다.

③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0항에 따른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</u> <u>를 받으려는 자가 하천시설 또</u> <u>는 공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점용시설을 설치하려는</u> <u>경우에는 하천의 오염 방지 및</u> <u>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</u> <u>“하천환경보전계획”이라 한다)</u> <u>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청에 제</u> <u>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⑪ 제10항에 따른 하천환경보</u> <u>전계획의 수립 기준·절차·방</u> <u>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며, 하천환경보전계</u> <u>획을 제출한 자가 하천점용허</u> <u>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을</u> <u>이행하여야 한다.</u>
제74조(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4조(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0항</u> <u>에 따른 하천환경보전계획의</u> <u>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</u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·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<u>통지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<u>통지와</u> <u>제3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</u>----- -----.
--	---